

수원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나16894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나16894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4. 17 선고 2014가단488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15. 10. 8.

판결 선고 2015. 10. 22.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4. 17. 선고 2014가단488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임야 745m²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벽돌 및 샌드위치 판넬조 양철지붕 화장실 4m'를 철거하고, 위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2, 3, 4,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m², 8, 9, 10, 19, 16, 15, 14, 13,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9m²를 각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G(이하 'G'라고만 한다) C 임야 74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E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를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철제 펜스를, 8, 9, 10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나무울타리를 각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m²(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 한다), 8, 9, 10, 19, 16, 15, 14, 13,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9m²(이하 "이 사건 'ㄷ' 부분"이라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4m²(이하 "이 사건 'ㄹ' 부분"이라 한다) 및 인접한 F 양 지상에 걸쳐 벽돌 및 샌드위치 판넬조 양철지붕 화장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양평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축척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ㄹ' 부분 벽돌 및 샌드위치 판넬조 양철지붕 화장실 4m²를 철거하고, 이 사건 'ㄴ', 'ㄷ'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이전의 이 사건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이 사건 'ㄴ', 'ㄷ', 'ㄹ' 부분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교환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ㄴ', 'ㄷ', 'ㄹ' 부분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마치지 못한 이상,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교환계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ㄴ', 'ㄷ', 'ㄹ' 부분의 소유권자인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ㄴ', 'ㄷ', 'ㄹ' 부분을 시효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ㄴ', 'ㄷ', 'ㄹ' 부분의 면적이 경미한 반면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가 입을 피해는 과중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성철

판사김신

판사김정환

별지